



한·중 FTA 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시사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2018. 3)되어 기존 양국 무역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중 FTA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최혜국대우조항 미비 등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서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최혜국대우조항 삽입, 내국민대우조항 이행 보장 등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 FTA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은 제도화 미비, 지리적 방대성과 격차 등을 이유로 일괄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보다는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할 것을 약속함¹⁾
 - 서비스·투자 분야는 상품 분야와는 달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중국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유예를 요청한 것임
 - 한·중 FTA 발효 후 2년 이내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2017. 12)하고 1차 및 2차 후속협상(2018년 3월, 7월)을 진행하였고, 2020년 3월 이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후속 협상기간 2년)

■ 중국의 서비스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양 국가가 모두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중요하다고 인식함(〈표 1〉 참조)

- 2016년 중국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10년 전 대비 8.7%p 상승한 반면, 제

1) 한·중 자유무역협정문(제22.2조와 부속서 22-가)

조업은 39.8%로 7.1%p 감소함²⁾

- 우리나라의 경우 對중국 서비스무역 수입 비중이 2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입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지급 비중은 수입의 2배 수준임
 - 양국 모두 2017년에는 사드로 인한 경제적 제재의 영향을 받아 서비스무역 비중이 감소함
- 우리나라는 서비스무역 부분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금융 및 보험영역의 경우 중국은 상품개발능력이 취약한 영역(건강, 연금, 자연재해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³⁾
 - 반면 중국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한국 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표 1〉 서비스무역에서의 비중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서비스무역에서의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중국 입장)							
수입	5.4	5.3	5.6	5.2	4.8	4.6	3.3
지급	6.6	7.4	8.9	10.2	9.6	9.9	6.8
한국 서비스무역에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한국 입장)							
수입	14.6	14.3	17.7	19.9	21.4	21.7	17.8
지급	13.7	12.5	11.9	12.4	13.5	14.3	13.0

자료: 한국은행, 중국 국가통계국

■ 기존 한·중 FTA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임에도 불구하고⁴⁾ 일부 국가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기존 한·중 FTA는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앞서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선점하였다는 점과 중국 FTA 최초로 금융 부문을 신설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최혜국 대우⁵⁾’ 조항이 합의 되어 있지 않음
 - 중국·호주 FTA(2015)와 중국·뉴질랜드 FTA(2009)에서는 최혜국대우 조항에 합의한 바 있음
- 한·중 FTA 협정문은 외국계 금융자본에 대한 현행 중국 국내법상의 시장진입 관련 규제와 비교할 때 차별적인 혜택이 없음

2) KITA(2018. 3), 「중국 서비스무역 동향과 시사점」

3) 한·중 FTA 후속협상 대비 전문가 간담회(2018. 1. 11)

4) WTO 도하 아젠다(Doha-Development Agenda)의 선진적인 양허수준과 흡사하게 체결되었다고 평가됨(황기식, 최신영, 김세진(2018),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분석에 따른 향후 추가협상에 대한 시사점: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2-2』, p. 226

5) 회원국이 비회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제3국과 차별을 금지함

- 하지만 중국·대만 ECFA 후속협상(2013 타결) 경우, 중국 시장진입자격요건에 대한 완화와 합자회사에 대한 대만측 보유지분의 범위를 넓여줌⁶⁾
- 중국·호주 FTA의 경우 외국계 금융자본에 대한 설립자본요건 충족없이 상업적주재하에서 자동차보험 시장진입이 가능

■ 또한 중국 국내법의 진입장벽과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진입에 한계가 있어 보험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출자비율 제한으로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갖고 중국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49%까지 출자비율이 제한되어 있으며, 설립자본요건과 30년 이상의 영업경력, 그리고 2년 이상의 대표처 주재 등의 조건 등이 있음
- 또한 외국계 자본이 중국내 금융서비스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원천적으로 제지받고 있음
 - 손해보험업종의 경우 출자비율이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계 자본의 보험 중개 및 대리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 중국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제한이 있음
- 중국·호주 FTA(2015년 발효)의 사례를 보면 한·중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보험산업의 경우 단기간 영향은 미미하였음(〈표 2〉 참조)
 -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 수입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7% 상승하고 보험을 제외한 금융서비스 수입액은 연평균 36.1% 상승함
 - 반면, 최혜국 대우와 자본요건 완화에도 호주의 보험서비스 수입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표 2〉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무역 수치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CARG
총 수입액	6,281	6,996	8,141	9,700	11,260	15.7%
보험서비스	39	47	46	40	36	-1.8%
금융서비스	87	194	293	368	317	36.1%
총 수치액	4,475	4,899	5,912	7,252	8,644	17.9%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rade in Service Australia"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과 중국 금융부문 개방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표 3〉 참조)

6) 펀드관리합자회사설립 시 50%이상 지분참여, 양안합자증권회사 신설 시 최대 51%까지 허용, 시범지구내의 증권회사·선물회사·투자자문회사의 지분은 49% 혹은 50%까지 허용(윤성욱·신지연, 2015), (ECFA 협정문 부속서4)

-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됨
- 최혜국 대우 조항이 추가된다면 중국이 타 국가와 새로운 형태로 완화된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도 자동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 중국 국내법상 출자비율 제한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갖고 금융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생명보험 출자비율은 40%에서 51%까지 상향되고, 3년 내에 출자비율 상한제도가 철폐될 것으로 공표함
 - 외국계 보험회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설립필수'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중국 내 보험서비스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중개업무 범위 개방과 대리업무가 가능해질 경우 보험서비스 판매가 이전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표 3〉 2018년 중국 금융부문별 개방계획

(단위: %)

구 분	주요 내용
은행 서비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 은행/자산관리社 출자비율 제한 폐지, 외자은행 지점 및 추가 독립법인 설립 가능 · 신탁/리스/자동차금융/금융중개/소비자금융 부문에 외국계가본 합작 장려 · 외국계 은행의 업무범위 대폭 확대
보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출자비율 상향(49%→51%), 3년내 제한 폐지 ·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사의 보험대리업무 가능(상업적 주재하) · 외국계 보험중개社의 업무범위를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개방 · 외국계 보험회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설립필수' 규정 폐지
금융투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기금/선물 출자비율 상향(49%→51%), 3년내 제한 폐지 · 합작 증권사의 중국내 주주 포함 규정 폐지 · 중외합작 증권사의 업무범위 제한 폐지 · 후강통 및 선강통 1일거래 한도 상향(130억→520억 위안), 강구통(105억→420억 위안)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1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

■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사드보복 제재와 같은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혜국 대우조항 삽입은 물론 내국민 대우 조항 이행 보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약속이 필요함

- 한·중 FTA 서비스 무역 보호 수준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분쟁해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국 정부의 사드제재와 같은 정치 리스크에 한국 기업이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⁷⁾
- 금융기관의 인허가의 경우, 중국 국내법상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kiri](#)

7) 황기식 외(2018), 전계서